



#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476호 2019. 4. 3. (수)

##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19-56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2
- 정선군 고시 제2019-63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3
- 정선군 고시 제2019-64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7
- 정선군 고시 제2019-67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8

##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9-341호 보상계획 열람 공고.....10
- 정선군 공고 제2019-343호 2018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고.....50

□ 발행 : 정선군청 기획실 (전화:560-2213, FAX:560-2592)

#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19-56호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의 멸실로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2일

정 선 군 수

### ○ 도로명주소 폐지

연번	도로명주소	폐 지 일	폐지사유	비 고 (관련지번)
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5길 1	2019. 3. 21.	건물 멸실	정선읍 봉양리 138-1
2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5길 2	2018. 12. 6.	건물 멸실	정선읍 봉양리 138-3
3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흥터길 63-6	2019. 3. 21.	도로명주소 관리 불필요	여량면 유천리 564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민원과(☎560-218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고시 제2019-63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의 멸실로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6일

정 선 군 수

○ 도로명주소 폐지

연번	도로명주소	폐 지 일	폐지사유	비 고 (관련지번)
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 3	2019. 3. 26.	건물 멸실	정선읍 애산리 514-3
2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송오다래길 27	2016. 7. 11.	건물 멸실	정선읍 덕송리 590-8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민원과(☎560-218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고시 제2019-64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8일

정 선 군 수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범위

지구명	위 치	지정내용			지정사유	비고
		유 형	등급	면적(m <sup>2</sup> )		
봉양2지구	정선읍 봉양리 산10번지 일원	붕괴위험	D	13,721 (L=600m)	낙석 및 붕락 등 붕괴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2. 붕괴위험지역 관리 기관 : 강원도 정선군(건설과)

3. 붕괴위험지역 지정 일자 : 2019. 3. 28.

4.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행위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붕괴위험지역에서는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우리군 건설과와 협의하여야 함.

5.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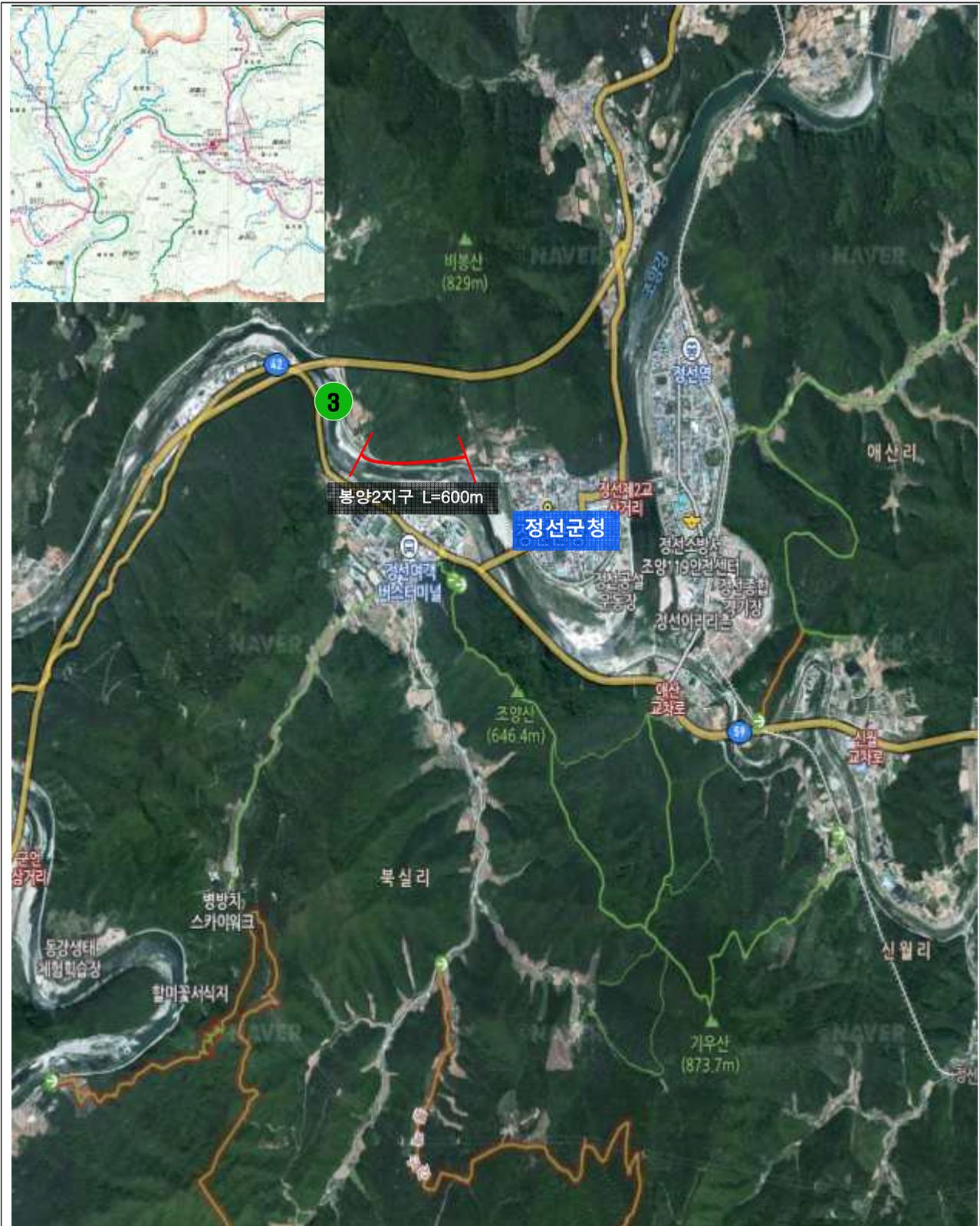
지역명	사업시기	사 업 내 용	관리기관
봉양2지구	2019년 이후	· 사면정비 1식(L=600m)	정선군

※ 정비계획은 다소 변동될 수 있음.

6. 문의처 : 정선군 건설과 재해예방팀(☎ 033-560-2479)

붙임 용지도 1부. 끝.

# 위 치 도 (봉양2 급경사지)



**대상지 전경 (봉양2 급경사지)**



(원경) 정선읍 봉양리 산10번지 일원



(근경) 정선읍 봉양리 산10번지 일원

정선군 고시 제2019-67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의 멸실로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일

정 선 군 수

○ 도로명주소 폐지

연번	도로명주소	폐 지 일	폐지사유	비 고 (관련지번)
1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7길 38-6	2019. 4. 1.	건물 부존재	신동읍 조동리 201-52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민원과(☎560-218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9-341호

## 보상계획 열람 공고

전원개발에 관한 촉진법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 (2018.03.14)』로 실시계획 승인된 『345kV 동해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 등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승인받은 실시계획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 15조의 규정에 명시한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공고 또는 통지된 보상계획에 이의가 있으시면 열람기간내에 서면으로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27일

정 선 군 수

### 1. 사업의 개요

- 가. 사업명 : 345kV 동해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 다. 보상사무소 :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
- 라. 사업의 목적 : 345kV 동해 기설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 보상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 리. 사업시행기간 : 2018.02. ~ 2020.12.(35개월간)
- 마.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강원도 정선군 일원
  - 면적 : 3,393㎡

2. 보상대상 토지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굴암리 711, 714, 715, 716, 717, 719-2, 719-3

3. 보상의 시기 : 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추후 감정평가하여 개별통지

나. 보상금 지급방법 : 은행계좌로 현금송금

다. 협의장소 : 한전 강원본부 전력관리처 지역협력부 및 소유자가 원하는 장소

라. 협의방법 : 대면협의

마. 보상금 산정 : 주민추천감정평가업체 및 도지사의 감정평가업체 추천이 없을 경우 감정평가법인 2개소 이상의 평가한 금액의 산출평균치로 산정

바. 보상절차 : 보상계획열람공고→감정평가→보상금액 통보→계약체결 및 권리 설정  
→보상금 지급

사. 주민추천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도지사의 추천 :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  
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하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전 강원본부 전력관리처 지역운영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보상계획의 열람

가. 열람장소

○ 강원도 정선군청 경제과(033-560-2434)

○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 전력관리처 지역협력부

(주소 :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304, 부림빌딩 5층 ☎033-259-2523, 259-2524)

나. 열람기간 : 2019.04.02 ~ 2019.04.19.(17일간)

5. 기타사항 : 보상토지의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서 및 개별통지 내용을 참조 하  
시기 바라며, 소유자 및 관계인께 우편통지 하였으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별도의 통지 없이 이 공고로 대신 합니다.

정선군 공고 제2019-343호

2018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따라, 우리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투자 현황(예방·대비·대응·복구사업 등) 및 운영성과 등을 알려,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로 재난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8년도 재난관리실태를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7일

정 선 군 수

1. 재난관리 실태 공시 총괄

- ◆ 2018년에는 5월 집중호우 및 10월 태풍 콩레이로 인한 35농가의 비닐하우스, 농작물 등에 9천7백만원의 피해가 발생해 시설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3천9백만원이 지급되었으며, 한해 동안 88건의 크고작은 화재가 발생하여 1명 사망, 8명 부상, 3억1천6백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실적입니다.
  - 재난에 대응할 조직은 3개과 142명으로 자연재난 및 감염병, 가축전염병 등 사회재난에 대응하였으며,
  -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는 2016~2017 일제정비를 거친 후, 지난해와 변동없이 총 8종 10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재난발생 시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공무원 및 지역자율방재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총 30회에 걸쳐 312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 안전모니터 봉사단의 재난안전관리 의식함양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훈련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 또한, 각종 안전사고, 화재예방 등에 대한 홍보활동으로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캠페인 등 12회에 걸쳐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여 군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 안전관리계획 및 정책에 대한 총괄·심의를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 2회, 안전정책실 무조정위원회를 5회 개최하였고, 신속한 재난의 대응·복구를 위하여 재난안전대책 본부와 감염병 등 주요 재난별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재난예방을 위한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59억7천6백만원이 증가한 총 340억6백만원을 확보하여 급경사지정비, 하천재해예방사업, 재해위험지구정비, 배수로정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 기름유출사고에 대비하여 오일웬스 등 4종의 환경 방재물자와 호우피해 등에 대비하여 마대 등 7종 27,500점의 수방자재를,
- 의료시설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 및 보건소(지소 및 진료소 포함) 21개소에 224개의 병상과 의사 32명, 간호사 95명의 응급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 학교, 경로당, 관공서 등 주민 19,701여명을 대피·수용할 수 있는 60개소의 임시 주거시설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구조장비로는 사다리차와 구조공작차 그리고 드론 1기를, 응급복구 장비는 덤프, 굴삭기 등 254대, 산불진화헬기 1대 임차배치 및 산불진화차, 동력펌프 등 2,110점(대)의 진화장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재난복구 및 대응관련 인력(기능)은 토목, 건축, 전기 등에 62명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 적십자봉사대, 새마을부녀회, 해병전우회 등 특수단체 및 자원봉사단체에 6,406명의 인원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대상시설 108개소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은 1개소이며,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상황실은 전력통신시설에 대한 면진테이블을 설치하여 지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해당연도 재난관리 기금적립액은 405백만원으로 법정기준액의 111%를 확보하였으며,

- 2018년 재난관리기금 확보액(전체)은 18억6천1백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억1천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확보된 재난관리기금은 지난 5년간 총 6억3백만원을 사용하였으나, 2017~2018년 2개연도에는 재난관리기금 확충을 위하여 일상적 경비 및 도기금 지원에 따른 매칭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사용하여 기금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는 2등급으로 지난해(7등급)보다 5등급 향상되었습니다.

◆ 그 밖에,

- 경주지진을 계기로 정선군에서는 전국 최초로 지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4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 하천수계별 홍수 도달시간 예측으로 자연재해의 선제적 예방과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10억원의 사업비로 홍수재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재난 발생 시, 피해 복구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군민들의 생활 주변 위험요소에 대한 보장 장치로 「정선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우리 군의 재난관리역량은 재난 저감을 위한 행정적 노력과 구조적인 재난대응능력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며, 향후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더욱 안전한 정선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재난관리 실태 세부 공시

가.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단위 : 건 / 천원)

일시	재난(피해) 원인	피 해 내 용	복 구 내 용	추진 사항
`18.5.16.~18.	호우	-공공시설 : - -사유시설 : 5 / 4,000	-공공시설 : - -사유시설 : 5 / 3,500	
`18.10.4.~7.	태풍	-공공시설 : - -사유시설 : 30 / 93,362	-공공시설 : - -사유시설 : 30 / 36,000	
`18. 1. 1. ~12. 31.	화재	-시설피해 : 88 / 316,730 -인명피해 : 사망1, 부상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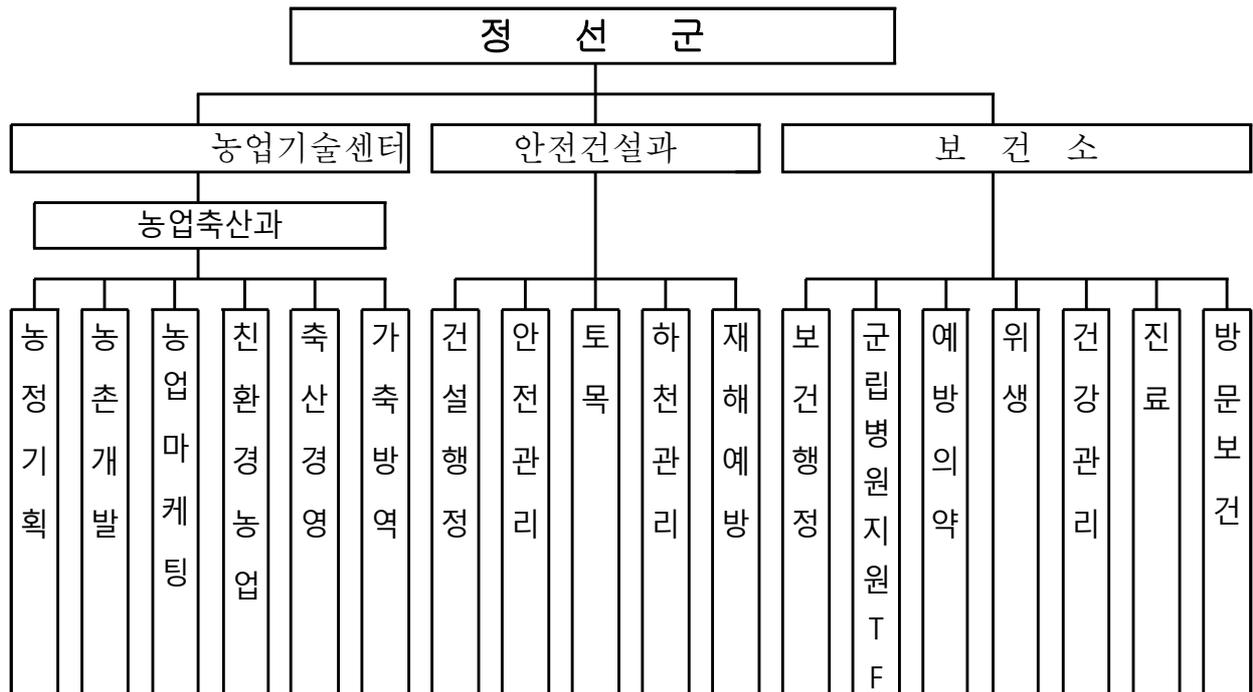
☞ 피해발생 증감원인

- 5월 집중호우와 10월 태풍 콩레이로 비닐하우스 및 농작물 피해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소규모 화재로 재산피해는 줄었으나 사상자는 전년 대비 증가함.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 실적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 조직의 구성



※ 법 제3조1호에 따른 재난 : 자연재난, 사회재난(감염병, 가축전염병 포함)

○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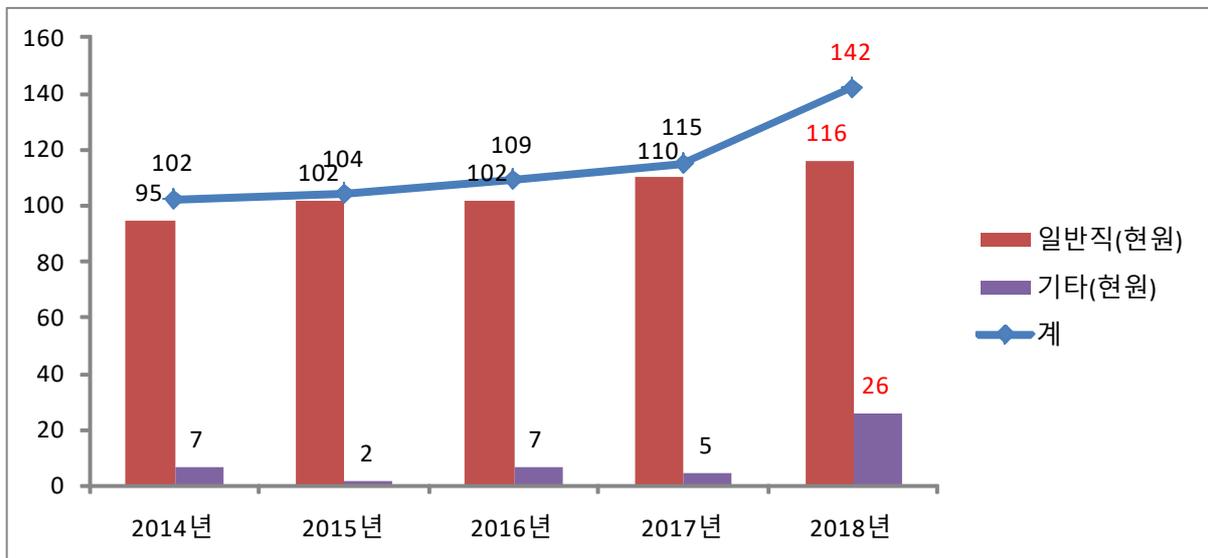
(단위 : 명)

과 별	계	일 반 직							기타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원	138	115		5	28	38	27	17	23
	현원	142	116		5	53	28	20	10	26
농업기술 센터	정원	50	27		2	9	8	2	6	23
	현원	54	30		2	10	10	3	5	24
안 전 건설과	정원	20	20		1	6	7	4	2	
	현원	22	20		1	7	5	4	3	2
보건소	정원	68	68		2	13	23	21	9	
	현원	66	66		2	36	13	13	2	

○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102	104	109	115	142
일반직(현원)	95	102	102	110	116
기 타(현원)	7	2	7	5	26



☞ 일반직 및 기능직 현인원의 증감원인

- 정선군 조직개편에 따른 농업기술센터-농업축산과 통합으로 인력 27명 증가

2)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 체계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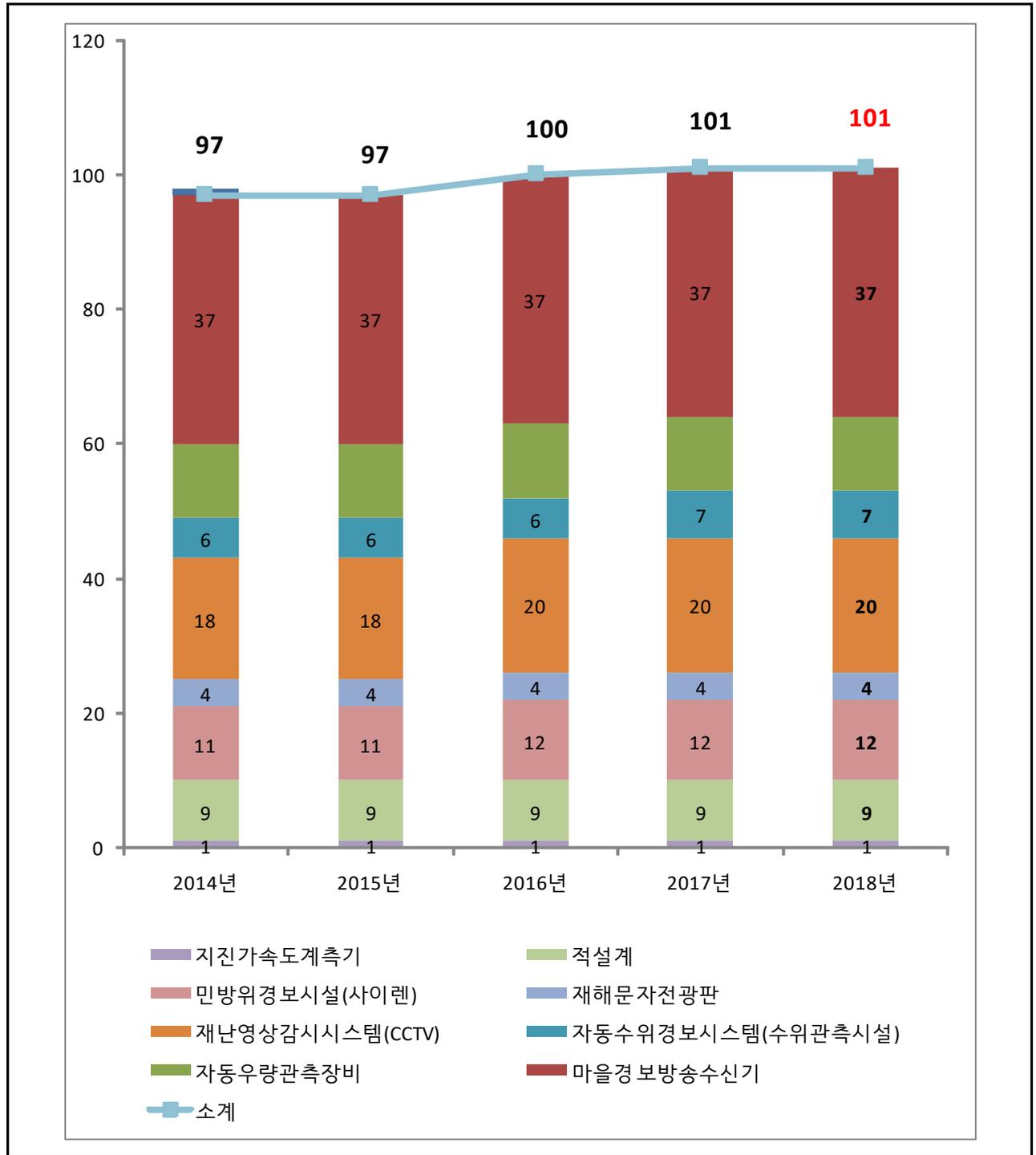
구 분	개소	설치장소
마을경보방송수신기	37	정선읍 가수리외 36개소
자동우량관측장비	11	정선군청외 10개소
자동수위경보시스템(수위관측시설)	7	정선2교외 6개소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20	역전배수펌프장외 19개소
재해문자전광판	4	임계면사무소외 3개소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12	정선군청외 11개소
적설계	9	임계면 백복령외 8개소
지진가속도계측기	1	정선군청

○ 연도별 현황

※ 정선군 자체 설치 현황임.

(단위 : 개소)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b>계</b>	97	97	100	101	<b>101</b>
마을경보방송수신기	37	37	37	37	<b>37</b>
자동우량관측장비	11	11	11	11	<b>11</b>
자동수위경보시스템(수위관측시설)	6	6	6	7	<b>7</b>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18	18	20	20	<b>20</b>
재해문자전광판	4	4	4	4	<b>4</b>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11	11	12	12	<b>12</b>
적설계	9	9	9	9	<b>9</b>
지진가속도계측기	1	1	1	1	<b>1</b>



☞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 증감원인

- 재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16~2017년에 노후 시설에 대한 보수·교체와 수위관측시설(수위계) 1개소를 추가한 이후 2018년도에는 변동 시설이 없음.

## 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에방에 관한 홍보

## (가) 재난관리에방을 위한 교육·훈련

(단위 : 명)

과 정 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참석인원	비고
제1기 지자체 부단체장 재난안전 전문교육	2.6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	
제1기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설계과정	2.7~9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	
제1기 재난대비역량지원 기본과정	4.5~6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	
2018년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재난담당 공무원 업무연찬회	6.18	정선군	45	
2018년 기능연속성계획 수립과정	6.18~19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	
2018년 재난안전 실무자과정	6.20~22	공군항공단	1	
제2기 재난안전 체험교육	6.25~27	강원도인재개발원	5	
2018년 관리자 기본과정	6.27	한국과학기술원(KAIST)	1	
제1기 재난안전 실무자과정	6.27~29	KSR인증원	1	
제2기 재난대비역량지원 심화과정	7.2~7.3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스킨스쿠버 교육	7.14~15	강원대 해양관광레저센터	2	의소대 34
제2기 재난안전 실무자과정	7.18~20	공군항공단	1	
제3기 재난관리 평가과정	7.30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	
2018 권역별 가축질병 담당자 교육	9.3	행정안전부	3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사용자 교육	9.13	강원도	1	
제3기 재난안전 체험교육	9.17~19	강원도인재개발원	1	
제4기 재난안전 체험교육	10.10~12	강원도인재개발원	3	
제4기 안전점검 실무과정	10.22~24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	
2018 실무자 기본과정	12.13~14	한국과학기술원(KAIST)	1	

○ 지역자율방재단 재난관리 교육·훈련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 용	주관	비고
'18. 3. 8. ~ 3. 9.	속초시 한화콘도리조트	6	2018년 지역자율방재단 재난대응 역량강화 교육	강원도	
'18. 4. 5.	청풍리조트	2	2018년 지역자율방재단 직무능력 강화 교육	행정안전부	
'18. 5. 18.	정선군	2	2018년 재난안전한국훈련 참여	정선군	
'18. 5. 30.	정선군청	9	자율방재단장 자연재난 대비 교육	정선군	
'18. 10. 23.	동해시 동해체육관	16	2018년 강원도지역자율방재단 연 합회 전진대회	강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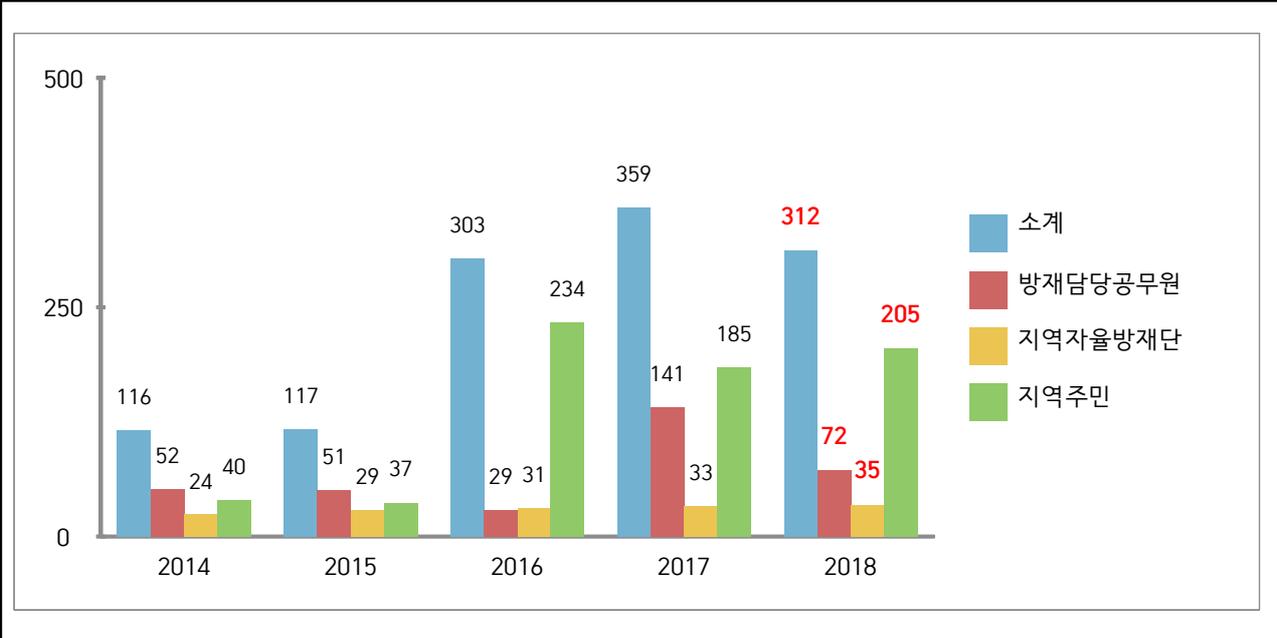
○ 재난관리에방을 위한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훈련

교육/훈련명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 용	주관	비고
소소심 체험훈련	'18.5.17	정선 아리랑시장	110	소소심 체험훈련	정선군 정선소방서	
물놀이 안전관리 교육	'18.6.7	정선소방서	37	물놀이 안전관리 교육	정선군 정선소방서	
강원도 안전보안관 교육	'18.6.26	원주시청	9	안전보안관 임무 및 역할 교육	강원도	
수난구조대 스킨스쿠버교육	'18.7.14~ 15	강원대 스포츠센터	34	수난구조대 스킨스쿠버 교육	정선군	
도민 안전체험교육	'18.11.7	태백 365 세이프타운	12	지진 시뮬레이션 및 트리트 랙 체험	강원도	
민간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교육	'18.11.30	원주시청	6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 상황 매뉴얼 운용 교육	강원도	

○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116	117	303	359	312
방재담당공무원 전문성교육	52	51	29	141	72
지역자율방재단 교육·훈련	24	29	31	33	35
지역주민 교육·훈련	40	37	234	185	205



☞ 교육·훈련 참석인원의 증감원인

- 재난에 대처함에 있어 군 담당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자율방재단 및 군민들을 대상으로 재난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교육은 소폭 감소하고, 지역주민 교육 인원은 소폭 증가하였음.

(나) 안전모니터봉사단 재난안전관리 교육·훈련 / 봉사단원 제보실적

○ 교육·훈련 실적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 용	주관	비고
'18. 6. 22.	강릉	8	강원도 안전보안관 교육(1차)	강원도	
'18. 11. 06	춘천	5	강원도 안전보안관 교육(3차)	강원도	
'18. 11. 06.	태백	12	도민 안전체험교육	강원도	

○ 제보·처리 실적

봉사단원	제보실적	처리실적			비 고
		완료	진행	불가	
27	-	-	-	-	-

## (다) 재난관리 관련 언론홍보

○ 현장홍보 실적(안전점검의 날 행사, 캠페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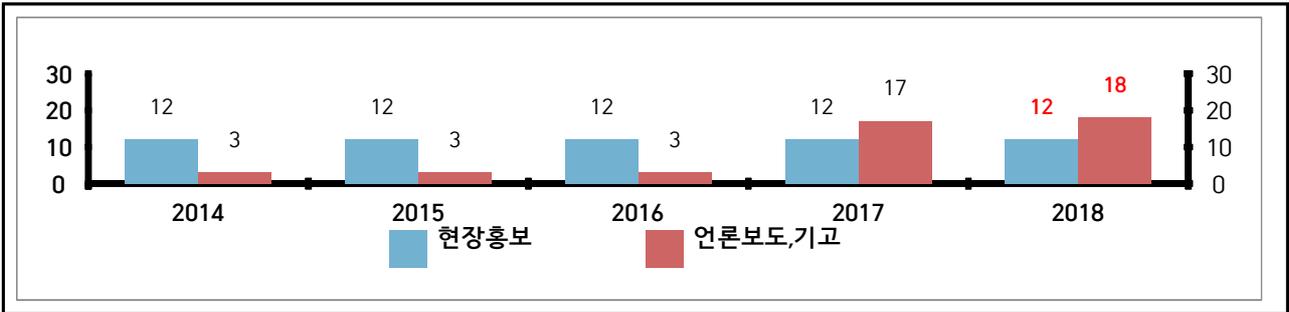
연번	행사명	주요내용	행사일시	장소	참석인원	비고
1	안전점검의 날 행사	2018 평창 안전올림픽 홍보	1.19	정선아리랑시장	57	
2	"	설날맞이 교통안전 캠페인	2.06	정선아리랑시장	35	
3	"	2018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3.07	정선아리랑시장	20	
4	"	건조기 대비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	4.02	정선아리랑시장	40	
5	"	봄철 산악사고 예방 캠페인	5.26	신동읍 두위봉 일원	20	
6	"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6.07	정선읍 범바위 일원	45	
7	"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7.27	아우라지 일원	35	
8	"	폭염대비 행동요령 홍보	8.02	정선아리랑시장	18	
9	"	가을철 산악사고 예방 합동캠페인	9.21.	민동산 일원	25	
10	"	소소심 체험 훈련	10.31	정선아리랑시장	17	
11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11.09	정선아리랑시장	25	
12	"	「내 집 앞 눈치유기 운동」 홍보	12.07	정선아리랑시장	25	

## ○ 언론 보도 및 기고실적(신문, 방송 등)

연번	기사제목	보도일시	언론사	비고
1	정선군, 65세이상 노인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18.01.04	강원신문	
2	정선군,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8대 분야로 확대	`18.02.19	강원도민일보	
3	정선군, 국가안전대진단 현장점검 실시	`18.03.21	프레시안	
4	정선군, 국가안전대진단 중간보고회 개최	`18.03.26	전국매일	
5	정선알파인경기장 안전문제 해결 총력 기울인다	`18.03.30	강원일보	
6	정선군, 풍수해보험 추가지원 지속 추진	`18.04.03	프레시안	
7	정선군,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획회의 개최	`18.04.20	이뉴스투데이	
8	정선군, 주요 건설사업장 현장점검 실시	`18.04.26	뉴스원	
9	정선군,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18.05.18	전국매일	
10	정선군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 운영	`18.06.04	강원도민일보	
11	정선군 여름철 자연재난 총력대응	`18.06.15	연합뉴스	
12	정선군, 2017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추진 전국 우수기관 선정	`18.06.20	전국매일	
13	정선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수난구조교육 실시	`18.07.16	프레시안	
14	정선군, 무더위쉼터 65개소 운영	`18.07.17	뉴스원	
15	정선군수 물놀이 관리지역 현장점검 실시	`18.08.01	전국매일	
16	정선군,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추진 기관표창 수상	`18.11.19	강원도민일보	
17	정선군, 동절기 화재취약시설 합동 안전점검 실시	`18.11.23	강원일보	
18	정선군, 강원도 합동 '내집 내점포 앞 눈 치우기' 캠페인 전개	`18.12.10	뉴스원	

○ 연도별 비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현장홍보실적(횟수)	12	12	12	12	12
언론보도·기고실적(횟수)	3	3	3	17	18



☞ 현장홍보 및 언론보도 증가원인

- 매달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에 기여하였으며, 전체 언론보도도 전년대비 소폭 증가함.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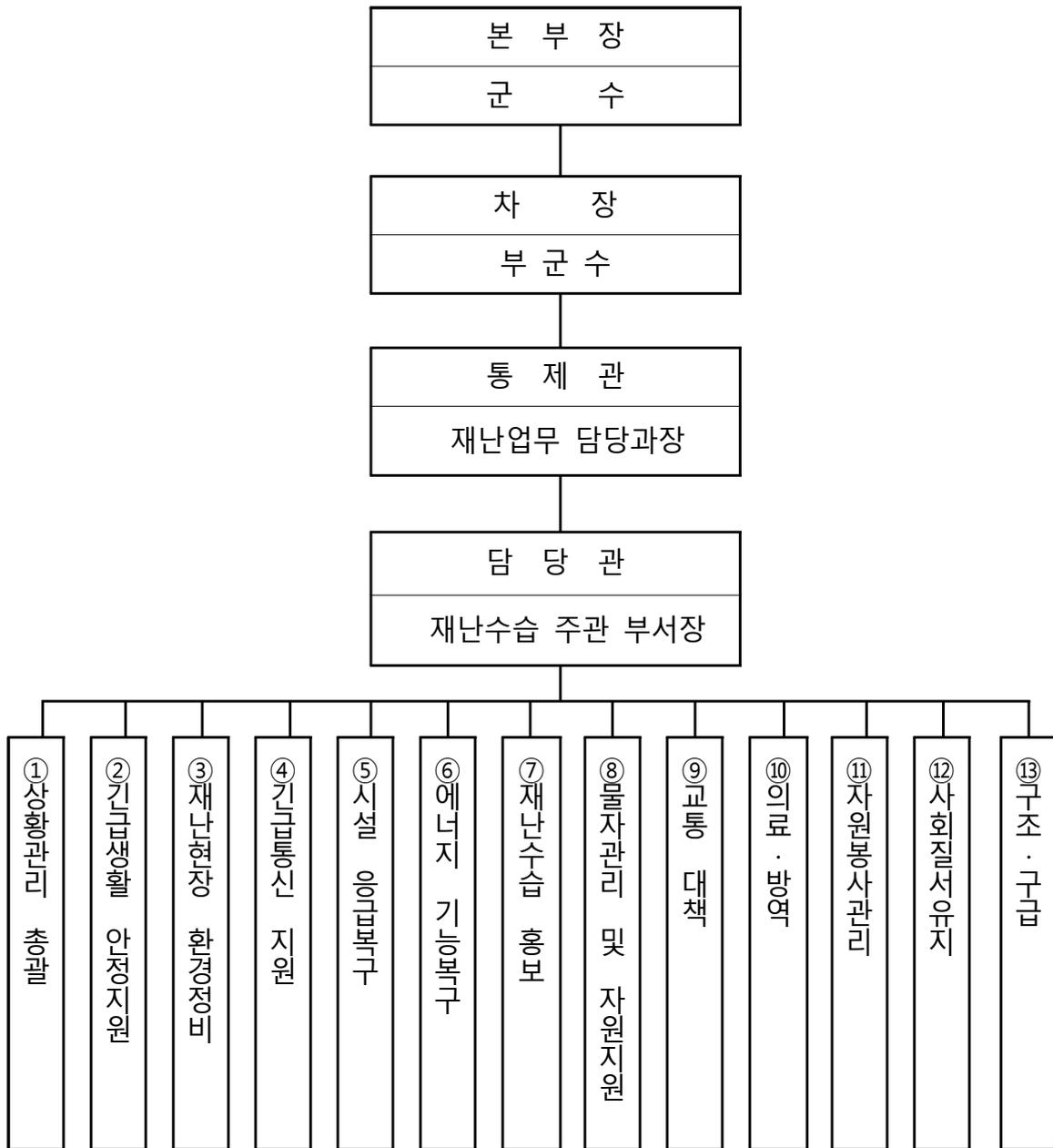
(가)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① 기본적인 안전관리체계

○ 안전관리기구의 기능

구 분	근 거	구 성	기 능
안전관리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 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 군수</li> <li>• 위 원 : 11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li> <li>•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li> <li>•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를 협의 및 조정</li> <li>•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li> <li>•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li> </ul>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같은 법 제 11조 제 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 부군수</li> <li>• 위 원 : 11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관리위원회에 부의할 안건 사전검토</li> <li>• 재난관련기관 협조사항 처리</li> <li>• 안전대책위원회 효율적인 운영도모</li> </ul>
재난안전 대책본부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	같은 법 제 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본부장 : 군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li> <li>•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li> <li>•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li> <li>•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li> <li>•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ul>
재난 안전상황실 설치·운영	같은 법 제 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황실장 및 반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시 초동 조치 및 지휘</li> <li>• 사고수습대책 추진상황의 확인</li> <li>• 재난관련 언론보도사항 확인보고</li> </ul>
재난상황의 보고	같은 법 제 2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황실장 및 반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재난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내용 보고</li> <li>• 군수→도지사→행정안전부장관·재난관리주관기관장</li> </ul>
재난 신고	같은 법 제 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황실장 및 반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li> <li>• 시장·군수·구청장, 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 기관에 신고</li> </ul>

○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체계도



※ 협업기능 및 실무반은 재난유형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성·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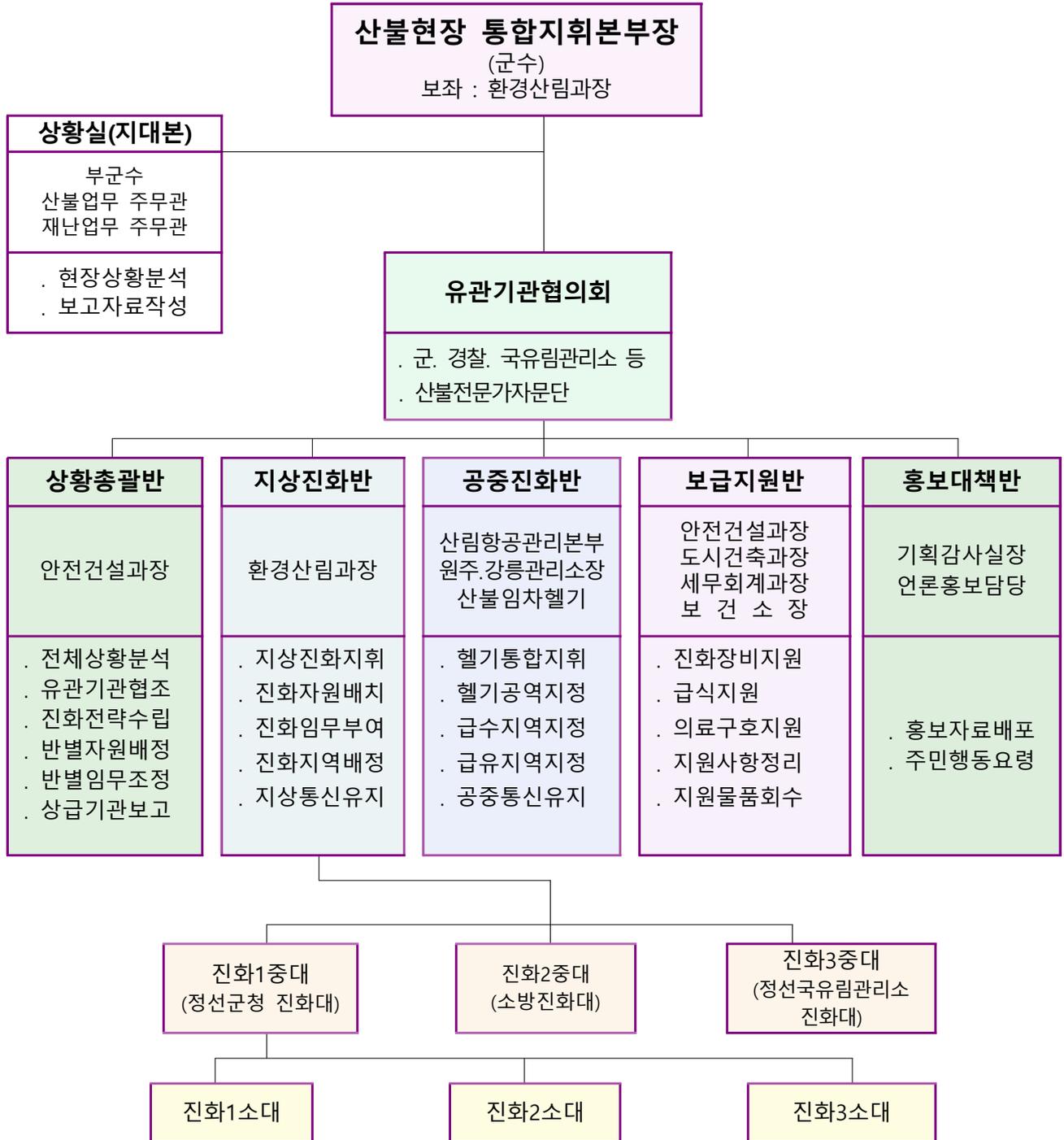
○ 재난관리기능의 임무 및 역할

- 상황관리 총괄 : 재난총괄담당 업무 수행(안전건설과)
  - \* 타 기능에 대한 상황관리 총괄 및 상호협력을 위한 지원 사항 등 파악
- 긴급생활 안정지원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및 이재민구호 등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주민생활지원과)
  - \* 인명피해(사망·부상·실종), 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제외

- 재난현장 환경정비 : 유해화학물질, 쓰레기 등 수거·처리 지원(환경산림과)  
\* 환경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환경정비 지원
- 긴급 통신지원 : 통신두절지역 통신시설 인프라 복구(자치행정과)  
\* 통신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통신 지원
- 시설 응급복구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지원(안전건설과)  
\* 공공·사유시설(환경·통신·에너지·교통시설 제외) 피해 현황 및 응급복구 상황 총괄
- 에너지 기능복구 : 가스·전기·유류 등 국민생활 밀착형 피해시설기능 회복 지원(지역경제과)  
\* 에너지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에너지 지원
- 재난수습 홍보 : 재난대처·수습과 관련한 각종 정보 배포·조정(기획감사실)  
\* 타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이슈 등 언론사항 총괄관리 및 지원
-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 국가 재난물자계획, 관리, 지원 및 적정상태유지(안전건설과)  
\* 타 기능에 대한 물자·자원(장비·자재·시설) 지원 총괄관리
- 교통대책 : 육상 교통수단 지원(도시건축과)  
\* 교통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수송 지원
- 의료·방역 : 재난지역 공중보건서비스 지원(보건소)  
\* 의료·방역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의료 지원
- 자원봉사 관리 : 재난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자치행정과)  
\* 타 기능에 대한 인력(민·관·군) 지원 총괄관리
- 사회질서 유지 : 지역 사회질서유지 및 교통관리(자치행정과, 경찰서)  
\* 교통, 범죄, 현장통제, 안전관리, 주민보호(대피 등) 등 경찰총괄관리
- 수색·구조·구급 : 재난지역 구조·구급 지원(안전건설과, 소방서)  
\*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및 사망·실종자 수색 등 소방총괄관리

② 주요재난별 안전관리체계

○ 산불 현장 통합지휘본부 구성



- 진화중대는 - 3개소대를 기준으로 편제(100명 내외)
- 진화소대는 - 3개진화조로 편제(30명 내외)
- 진화조는 - 10명 내외의 진화대원으로 편제
- 소방은 기존 조직 체계를 유지하면서 자원대기소 등 별도 설치 운영

※ 위 편제기준에 의거 상황별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편제, 진화 인력 확보

○ 정선군 감염병 방역대책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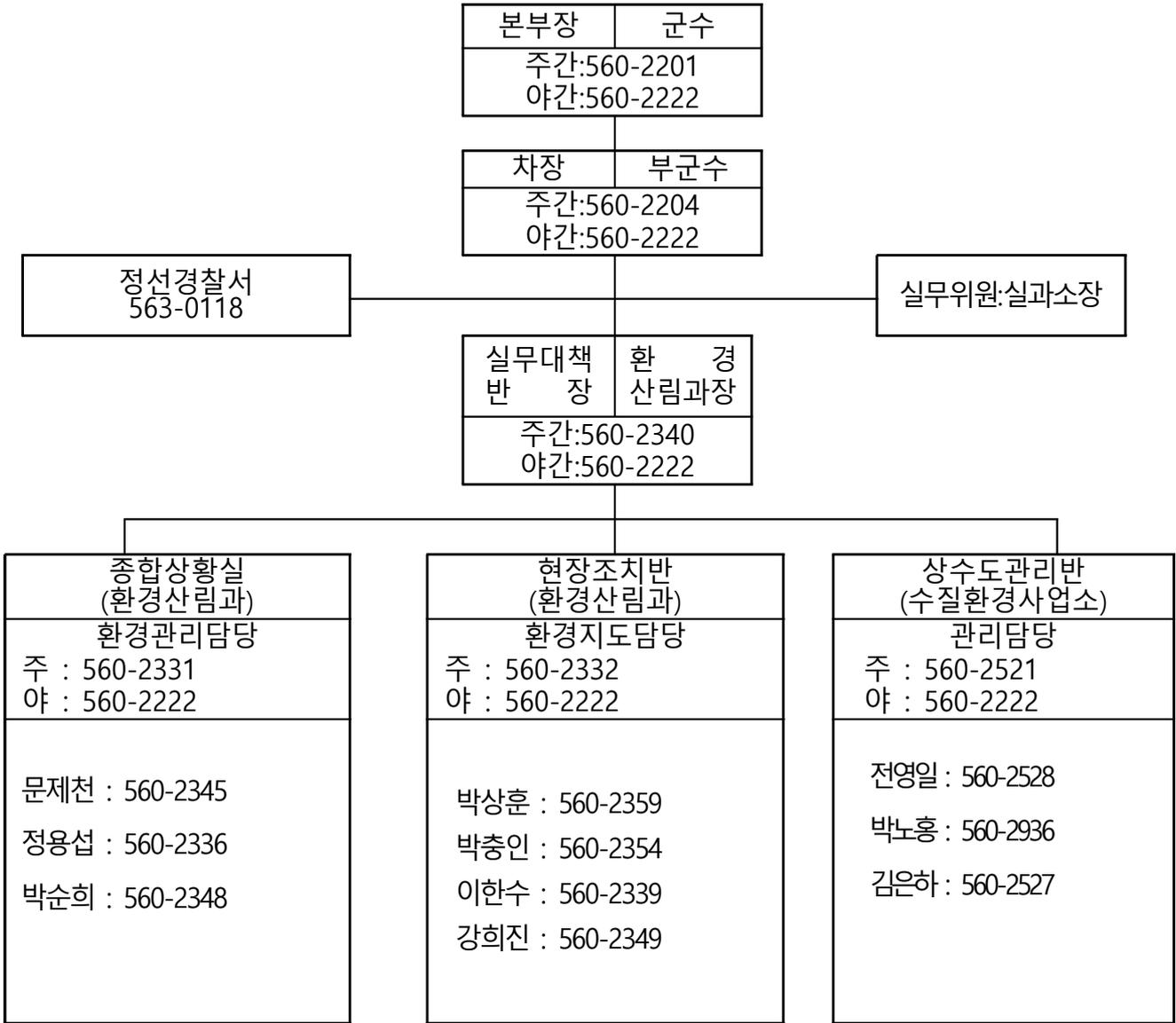


\* 상황에 따라 확대·축소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나. 팀별 임무 및 역할

구성	임무 및 역할	관련부서
총괄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역대책수립 및 질병관리본부, 강원도와 업무협조</li> <li>○ 환자발생 신고접수 및 보고관리</li> <li>○ 환자이송 및 검체 수송</li> <li>○ 지역내 격리병원 지정 및 격리시설 관리</li> <li>○ 지역내 유관기관 및 의료기관 협조체계 유지</li> <li>○ 질병정보 및 예방관리수칙 홍보</li> <li>○ 개인보호장비(N-95마스크, 보호복, 장갑, 고글등) 수급 관리</li> </ul>	감염병
역학조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li> <li>○ 자가격리자 관리 및 지원</li> <li>○ 퇴원환자관리</li> </ul>	위 생
방역소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내 감염지역 소독 (환자집, 환자이동구간, 구급차량, 보건소 등)</li> </ul>	예방의약
행정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 및 인력지원 (구급차, 운전원)관련 행정업무</li> <li>○ 방역물품구입 및 격리환자 관리물품 지원</li> <li>○ 예산지원 및 집행</li> </ul>	보건행정
소내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별진료소운영</li> <li>○ 정신건강상담 지원</li> <li>○ 기타지원사항(인력, 접촉자 추적관리 등)</li> </ul>	건강관리·방문보건

○ 수질오염사고 대책반 구성도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화암면	남 면	여량면	북평면	임계면
560-2601	560-2611	560-2621	560-2631	560-2641	560-2651	560-2661	560-2671	560-2681

덕 정 수 장	송 정 수 장	고한(사북) 정 수 장	납돌(조동) 정 수 장	증 산 정 수 장	화암(회동) 정 수 장	여량(북평) 정 수 장	임 계 정 수 장
812-4039	812-4036	812-4040	812-4044	812-4033 812-4042	812-4043 812-4045	812-4041	

◇ 한국환경공단 정선수도사업소(정수장 총괄관리)  
(사무실 812-4034)

## ③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건명(규정명칭)	주요내용	제정일자	비고
민방위재난종합상황실 운영규정	- 발생재난의 상황파악 유지 및 보고 - 파악된 상황의 신속한 전파 및 초동대처 지도	1997.09.26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 업무의 협의·조정	2005.03.22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005.03.22	
재난예·경보 운영규정	- 정확한 재난 예·경보 상황의 확인 - 예·경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속·정확하게 예·경보 실시	2006.02.13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조례	-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등에 관한 사항	2006.03.31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건축, 개발행위 등에 대한 제한으로 인명피해 예방	2007.4.17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 여름철 물놀이 행락객 인명피해 예방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012.05.30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 자연재해 사전대비·대응 및 복구활동 등에 관한 조사·분석 및 평가 - 시설물별 피해 발생원인의 조사·분석	2013.06.05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시 재해영향사전검토 및 저감대책 마련	2013.07.3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 - 재난관련기관 간의 공조체계 구축	2013.12.11	
정선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구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18.04.16	
정선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 재난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안전보험 운영 규정 마련	2018.10.05	

☞ 사회재난 범위 확대 및 군민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재난 구호 조례와 정선군민 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신설(2건)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 시설의 관리

시설 유형	시설명	시설현황	관리주체	지정일자	조치한 사항	비고
			해당없음			

※ 관리기관에 관계없이 관할지역에 있는 국가기반시설에 대하여 공시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가) 재난방지시설 정비실적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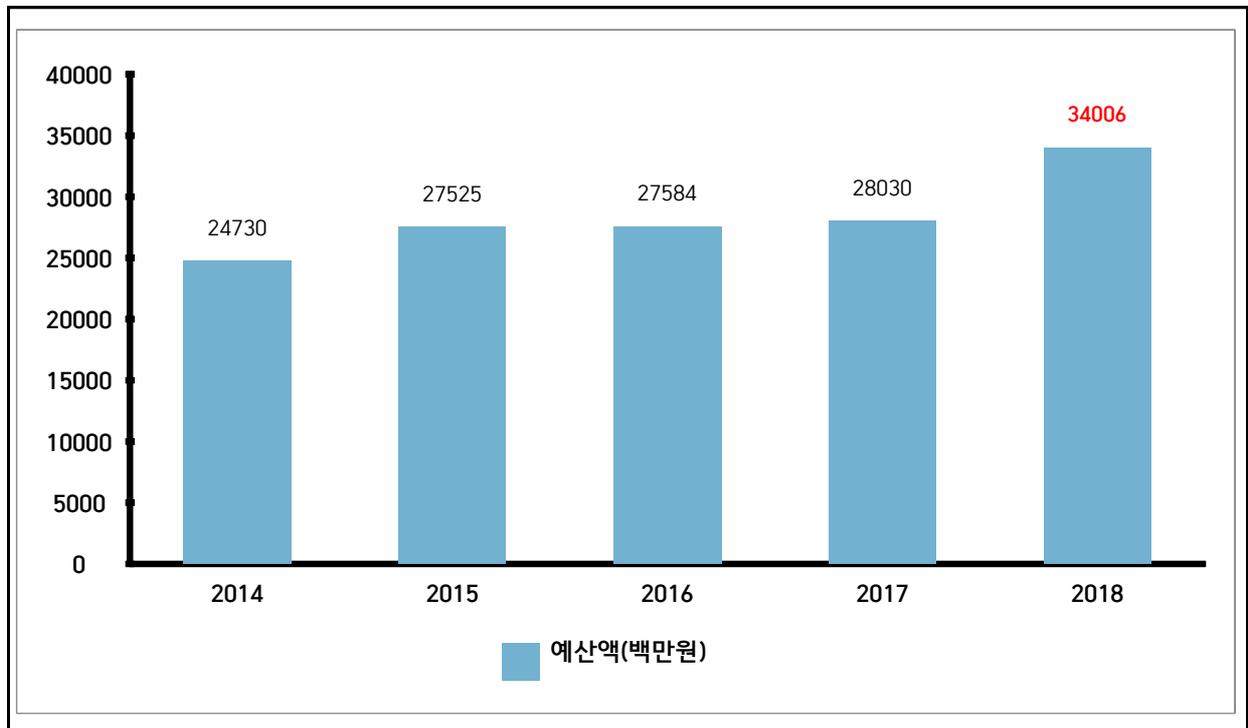
사업명	위치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정비목적
급경사지 정비사업	정선읍, 남면	낙동2, 세대2, 운치리 급경사지 정비	2018년	7,100	급경사지 재해예방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고한읍	고한11리 재해위험지정비	2018년	182	재해위험지 재해예방
재난예경보시설 운영관리	정선읍 외 8개읍면	예경보시설 유지관리 80개소	2018년	404	재난정보 홍보
배수펌프장 운영	정선읍, 북평면	배수펌프장 8개수 운영관리	2018년	584	침수방지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지장천(도장천)	하천정비 L=0.8km,	2018년	4,003	하천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	정선읍, 신동읍, 화암면	호안정비 L=2.12km,	2018년	2,989	소하천재해예방
하천,소하천정비	정선읍 외 8개읍면	준설 및 유지관리 L=72.22km	2018년	515	하천재해예방
군도 확포장 정비	정선읍 외 8개읍면	군도 정비	2018년	3,081	도로정비
농촌생활 용수개발	정선읍 외5개 읍면	생활용수개발	2018년	329	생활용수공급
농경지 배수로정비	정선읍 외8개 읍면	배수로정비	2018년	1,800	영농환경개선 및 재난방지
수리시설정비	정선읍 외6개 읍면	수리시설정비	2018년	768	영농환경개선 및 재난방지
농업기반정비 및 유지보수	정선읍 외5개 읍면	배수로, 농로	2018년	500	영농환경개선 및 재난방지
사방댐시설 및 유지관리	남면 외 5개 읍면	사방댐시설 및 준설 등 유지관리	2018년	1,895	산림재해예방

하수처리시설 증설	지장천하수처리장 외 3개소	처리용량 증설	2018년	5,598	안정적 하수 처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2018년	3,596	안정적 하수 처리
하수관거 유지보수	정선읍 외 8개읍면	하수관거 유지관리	2018년	575	안정적 하수 처리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	지장천 일원	설계용역 등	2018년	87	하수관거 정비

○ 재난방지시설 연도별 예산확보 현황(2014 ~ 2018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재난방지시설 예산확보	24,730	27,525	27,584	28,030	<b>34,006</b>



☞ 재난방지시설 예산확보의 증감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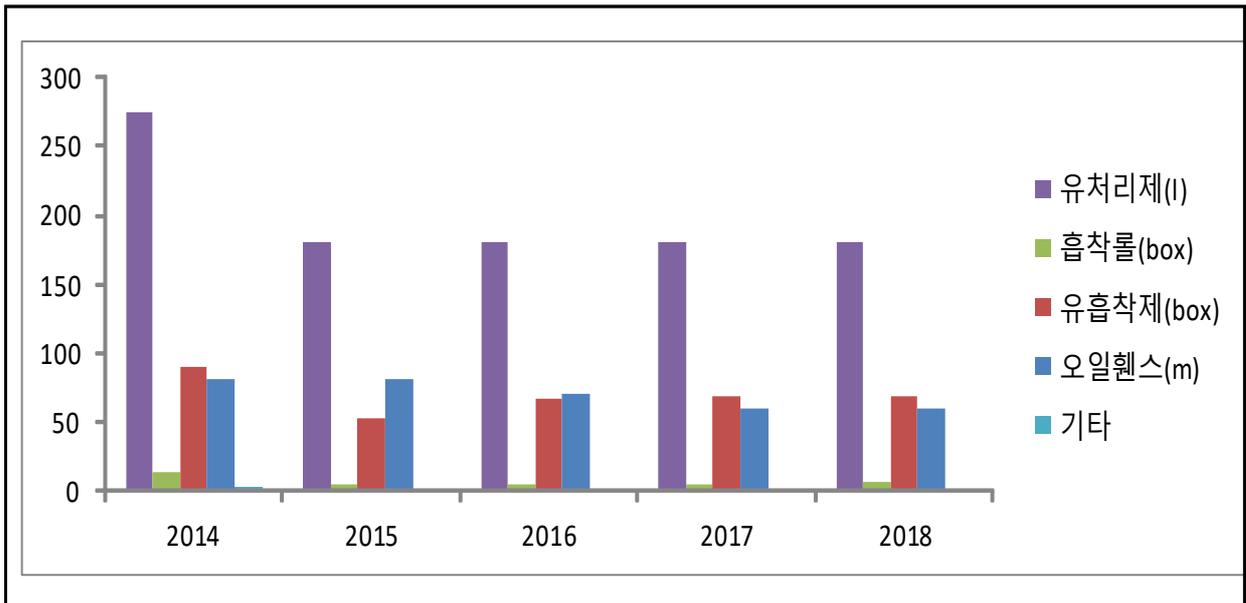
- 급경사지 정비사업 등 장기사업의 본공사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 및 재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증가로 전년도에 비하여 예산 확보액 5,976백만원이 증가함.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장비·인력의 지정  
(가)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 방재물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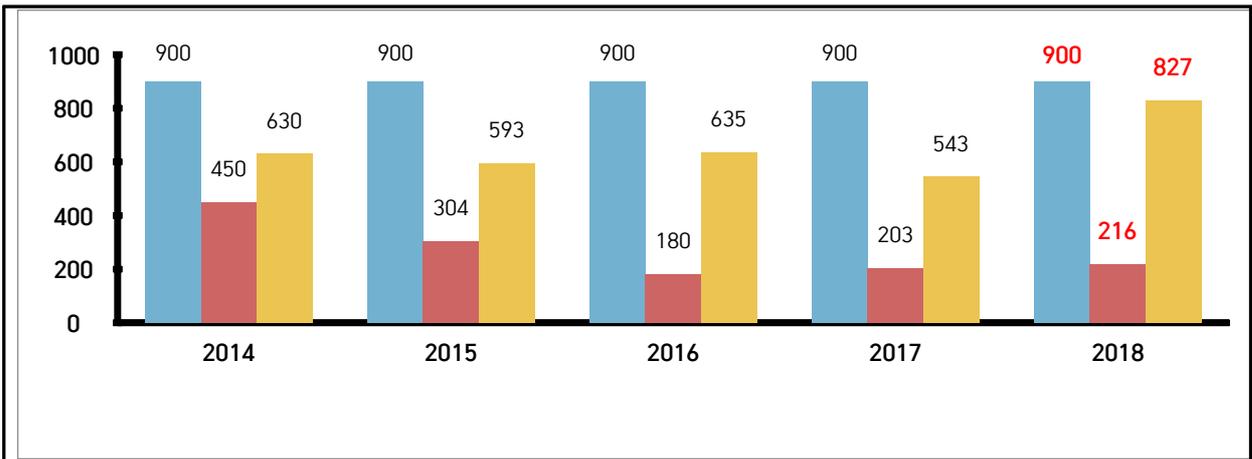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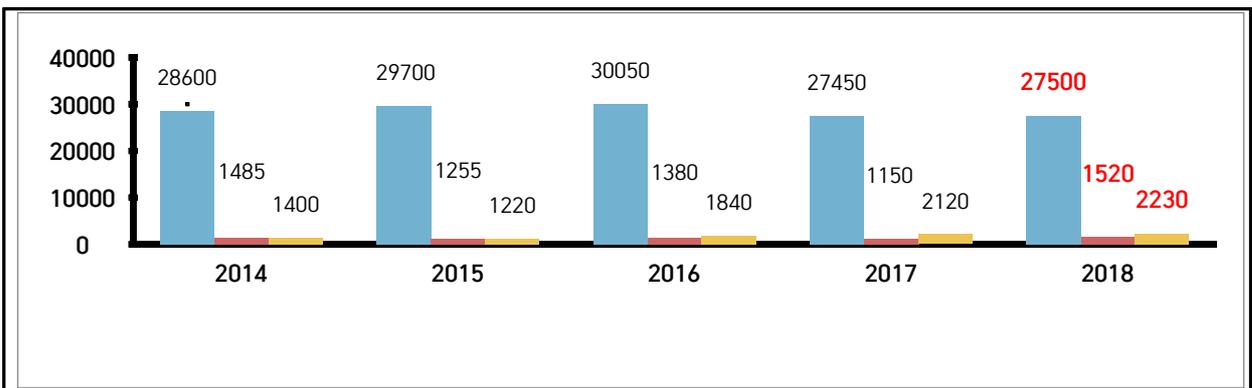
계	오일웬스 (m)	유흡착제 (BOX)	흡착롤 (BOX)	유처리제 (ℓ)	기타
총계	60	68	6	180	보호의 60, 소석회 3,000kg

방재물자 종류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458	317	321	313	<b>314</b>
오일웬스(m)	80	80	70	60	<b>60</b>
유흡착제(BOX)	90	52	66	68	<b>68</b>
흡착롤(BOX)	14	5	5	5	<b>6</b>
유처리제(ℓ)	274	180	180	180	<b>180</b>
기 타	보호의 20	보호의 40	보호의 50 소석회 3,000kg	보호의 60, 소석회 3,000kg	보호의 60, 소석회 3,000kg



○ 수방자재 연도별 현황

수방자재 종류별	2014	2015	2016	2017	2018
마대(40kg)	28,600	29,700	30,050	27,450	<b>27,500</b>
마대(1,000kg)	1,485	1,255	1,380	1,150	<b>1,520</b>
비닐(PE필름)	450	450	168	230	<b>206</b>
흡수성주머니	1,400	1,220	1,840	2,120	<b>2,230</b>
말뭍	900	900	900	900	<b>900</b>
묶음줄	450	304	180	203	<b>216</b>
작업공구	630	593	635	543	<b>827</b>



↳ 방재물자 확보의 증감원인

- 방재물자의 수량은 사용 및 보충 구매에 따른 증감이 있고 수방자재의 경우 매년 각 읍·면별 부족분에 대하여 파악하여 목표 비축량에 맞추어 구입·보유하고 있으며, 상기 외 필요한 물품은 예산범위에서 별도 구입·보유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증감원인은 없음.

○ 의료시설 현황

구분	의료시설	의사 (명)	간호사 (명)	구급차 (대)	병상수 (개)	영안실 (실)
합 계	21	32	95	4	224	2
병 원	2	14	53	2	224	2
보건소	1	4	21	2		
기타(지소및 진료소)	18	14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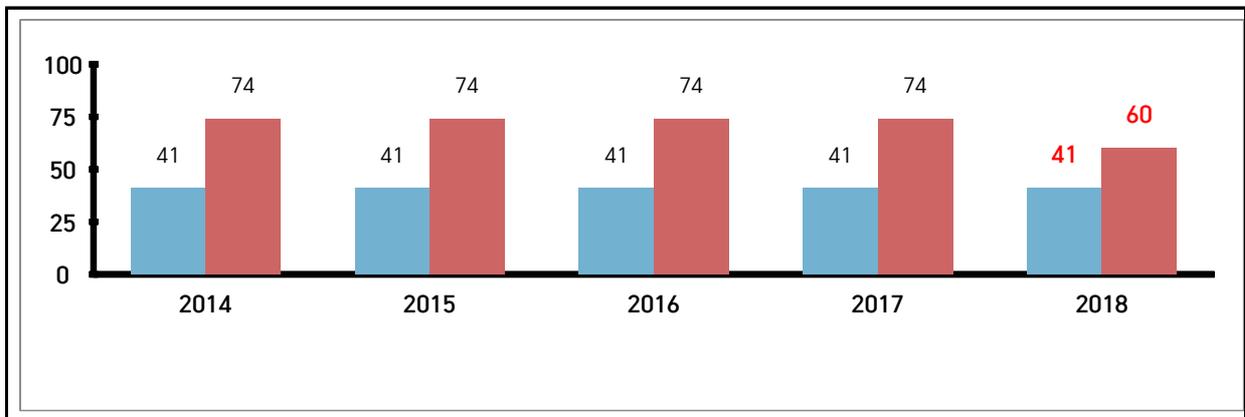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현황

구분	합 계		학 교		마을회관		경로당		관공서		기 타	
	개소	수용원	개소	수용원	개소	수용원	개소	수용원	개소	수용원	개소	수용원
수용 시설	60	19,701	20	16,568	-	-	35	1,280	-	-	5	1,853

○ 의료시설 및 임시주거시설 연도별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의료시설수	41	41	41	41	41
수용시설	개소	74	74	74	74
	수용인원	8,220	8,220	30,300	30,300



☞ 의료 및 수용시설 지정의 증감 원인

- 수용시설의 경우, 폐교·수리 등으로 사용 불가능한 임시주거시설 제외

(나) 장비 지정 현황

○ 구조장비 현황

(단위 : 대)

계	사다리차	구조공작차	배연차	헬기	비고
4	2	1			드론1

○ 복구장비

(단위 : 대)

구분	계	덤프 (15톤)	굴삭기 (6중)	그레이더	로우더	소형 덤프	추레라	기타
총계	254	82	33	2	5	2	2	128 엔지펌프95 수중펌프19 기타장비14

○ 산불진화장비 현황

(단위 : 대)

계	헬기보유	헬기임차	산불진화차	동력펌프	기 타
2,110	-	1	12	8	2,089

○ 기타장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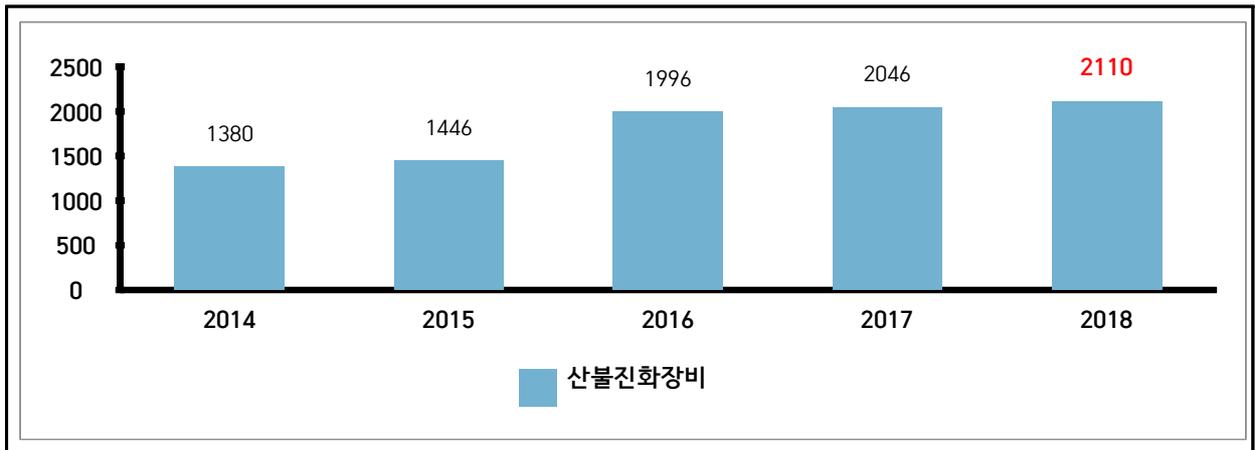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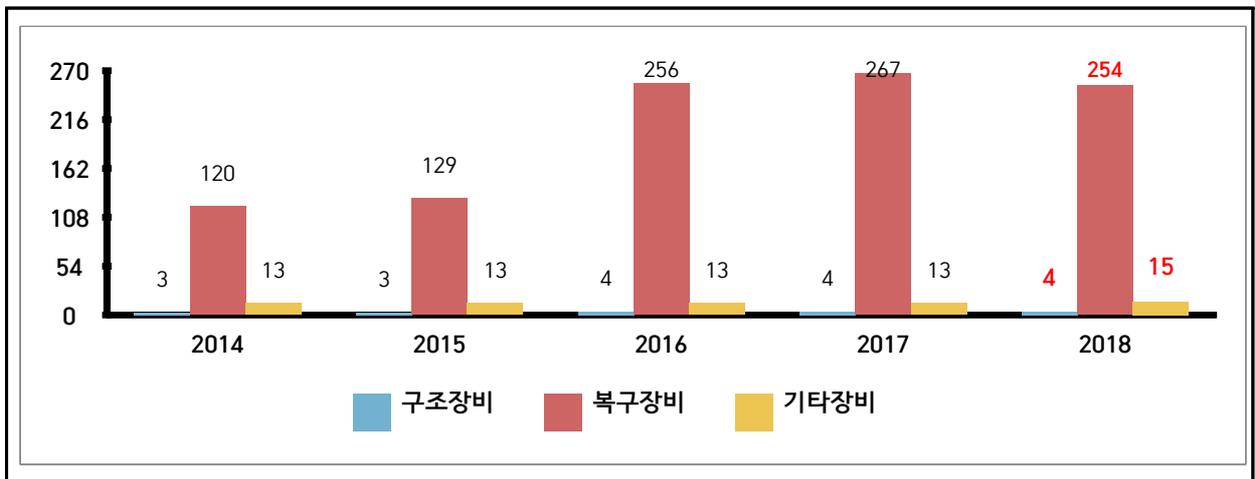
(단위 : 대)

계	용접기	컴프레사	양수기	발전기	천공기	착암기	기타	비 고
15	1	1	8	2	2	1		

○ 연도별 현황

(단위 : 대)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구조장비	3	3	4	4	4
복구장비	120	129	256	267	254
산불진화장비	1,446	1,996	2,046	2,110	2,110
기타장비	13	13	13	13	15



☞ 장비지정의 증감원인

- 지정장비는 기타 복구장비가 다소 감소하였고, 대형산불방지 관련 산불진화장비 추가 구매로 소폭 증가함

(다) 인력 지정 현황

○ 기술인력

(단위 : 명)

구분	계	토목	건축	전기	농업	전산	보건	기타
인원	10	2	3	2				3

○ 기능인력

(단위 : 명)

구분	계	전기공	통신공	중기운전	기타
인원	52	1	1	35	15

○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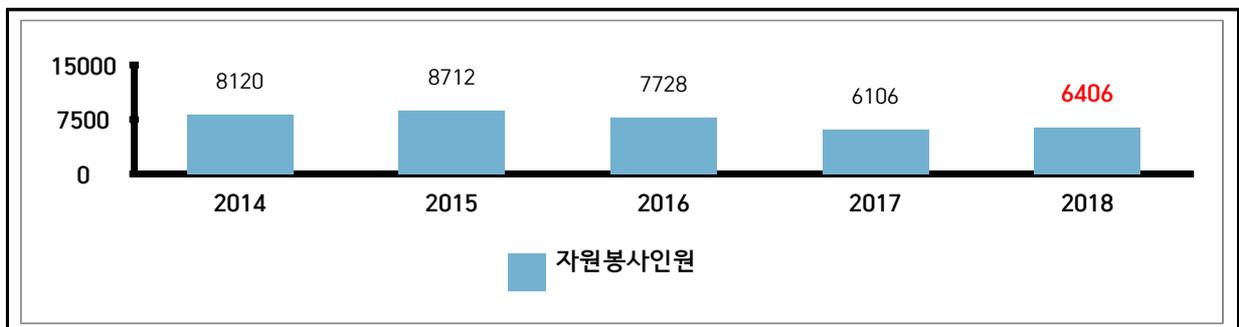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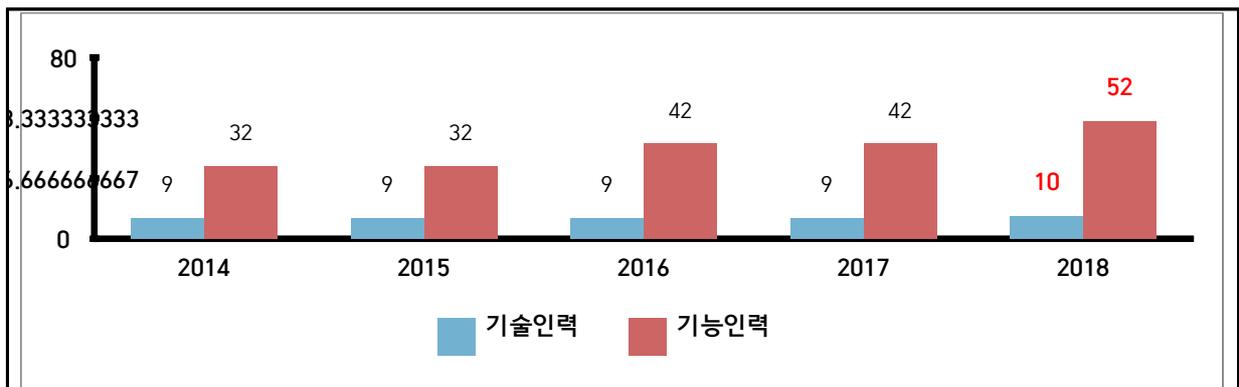
(단위 : 명)

계	적십자 봉사대	새마을 부녀회	해병전우회	모범 운전자회	여성단체 협의회	자율방 범대	기 타
6,406	238	231	19	46	15	499	5,358

○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자원봉사단체	8,120	8,712	7,728	6,106	6,406



인력지정 증감원인

- 기술·기능인력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자원봉사인원은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정선군 인구감소로 인하여 전체적으로는 감소하는 추세임.

8)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가)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

- 대상 : 재난관리 실태점검, 여름철 물놀이 실태 확인 등
- 점검·평가 결과

점검·평가 명	점검·평가일시	점검·평가 주관기관	점검·평가 결과	비고
2018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	'18. 11월	행정안전부	우수	
2017~8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추진	'17.11월~3월	행정안전부	우수	
2018년 재난관리평가	'18.1월~5월	행정안전부	우수	

※ 점검·평가 결과는 우수, 보통, 미흡기관 등으로 기재

(나)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시설물별	내진설계 대상(①) (동수, 시설물 수)	내진설계 적용 +내진성능확보+ 내진 보강 실적(②) (전년도 까지)	`17년 내진보강 실적		내진율(%) (②+③)/①×100
			동수(시설수) (③)	투자사업비 (백만원)	
공공시설	108	1	-	-	0.9%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내진율	-	-	-	-	0.9%

내진실적 및 내진율 등이 저조한 이유

- 정선군 지진방재 종합계획 수립 용역 과업에 대상시설물 15개소의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되어 있어 현재 추진중으로 '19년 상반기에 완료 예정이며, 평가결과에 따라 내진성능확보 추진 예정

(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종합상황실 내진대책 추진

구 분	구조체 내진 보강 여부	지대본·상황실		비고
		바닥 이중마루 보강 여부	전력과 통신 등 관련설비 면진테이블 설치 여부	
지역대책본부	부	여	여	
종합상황실	부	여	여	

(라)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지정 및 관리(해당없음)

지구별	긴급대피장소 (개소)	표지판(개)			경보 시스템 (개소)
		계	안내표지판	대피장소 표지판	
해 당 없 음.					

○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지정 및 관리 연도별 현황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정비 사업비 집행실적 (천원)		해	당	없	음
지구수(개소)					
긴급대피장소(개소)					
경보시설(개소)					

☞ 정비사업비, 긴급대피장소, 표지판 등 증감원인

- 해당없음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 재난관리기금 적립현황

(단위 : 백만원)

해당연도 최저적립기준액(①)	적립액(②)	확보율 (②/①×100)
364백만원	405백만원	111%

※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기준

-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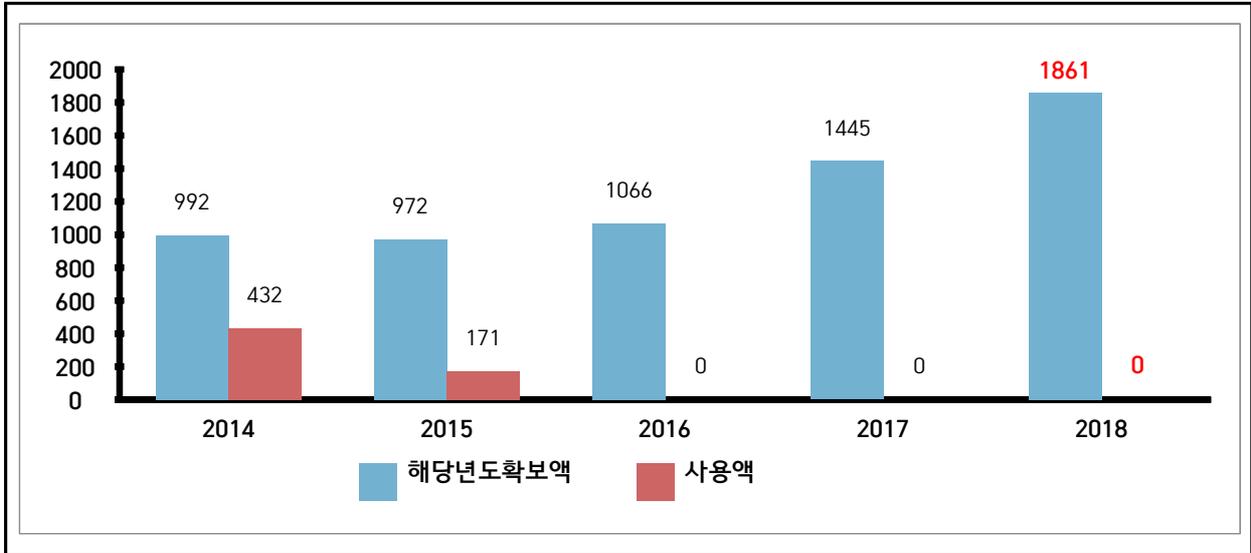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제1호가목(자연재난) 또는 나목(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 √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 √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 √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 √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 √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 √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 √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확 보 액		992	972	1,066	1,445	1,861
사 용 액	계	432	171	-	-	-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	-	-	-	-
	재해저감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164	71	-	-	-
	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	218	100	-	-	-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50	-	-	-	-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	-	-	-	-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	-	-	-	-
	재난피해자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	-	-	-	-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복구	-	-	-	-	-



☞ 재난관리기금 확보 및 사용액의 증가 원인

- 2018년 재난관리 기금 최저적립액은 364백만원이고 이에 405백만원을 적립하여 111%의 확보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 2018년 재난관리기금 확보액(전체)은 1,861백만원으로 지난해보다는 416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이는 2018년도의 해당연도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증가한 사항임.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운영 현황

○ 행동매뉴얼 작성·운영 등 현황

행동 매뉴얼명	소관부서	작성년도	매뉴얼 주요내용
풍수해(설해)	안전건설과	2006.12.27	풍수해(설해)재난 행동요령
지진	안전건설과	2006.12.27	지진재난 행동요령
대형화산폭발	안전건설과	2014.3.	대형화산폭발 행동요령
가뭄	안전건설과	2015.11.12	가뭄재난분야 행동요령
산불	환경산림과	2006.12.27	산불재난 행동요령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	환경산림과	2014.4.	화학유해물질 유출사고 행동요령
대규모수질오염	환경산림과	2014.4.	대규모 환경(수질)오염 행동요령
댐붕괴	안전건설과	2014.9.	댐붕괴 행동요령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안전건설과	2014.4.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행동요령
사업장대규모인적사고	지역경제과	2016.10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행동요령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도시건축과	2016.10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행동요령
가축질병	농업축산과	2006.12.27	가축질병 행동요령
감염병	보건소	2006.12.27	감염병분야 행동요령
정보통신	자치행정과	2006.12.27	통신사고 분야 행동요령
전력	지역경제과	2016.10	전력시설물 피해 행동요령
보건의료	보건소	2006.12.27	응급의료분야 행동요령
식용수	수질환경사업소	2007.8.29	식용수분야 행동요령
육상화물운송	도시건축과	2006.12.27	육상화물 운송분야 행동요령
가스	지역경제과	2016.10	가스시설물 피해 행동요령
문화재사고	문화관광과	2018.1.1	문화재사고 대응 행동요령
산사태	환경산림과	2018.4.5	산사태 분야 행동요령

## ○ 행동매뉴얼 개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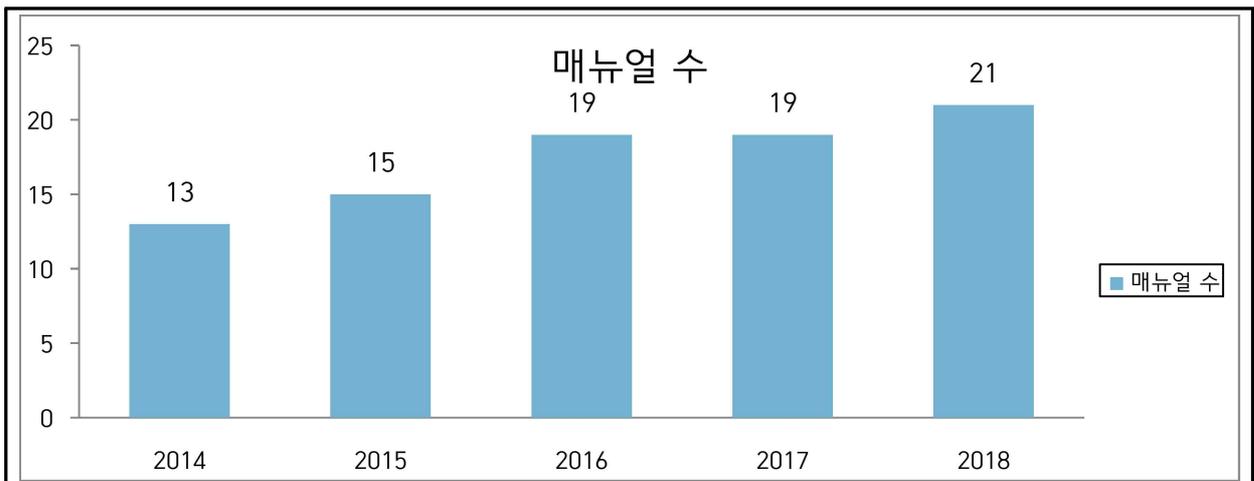
행동매뉴얼 명	개정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고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2018.1.10	소방청 협조체계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 반영	
산불	2018.2.28	산불 발생시 언론홍보 매뉴얼 반영	
보건의료	2018.2.27	지대본 실무반별 임무와 역할 수정	
산불	2018.11.13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신설에 따른 관리체계 수정	

○ 행동매뉴얼 숙달 훈련 실시 현황

행동매뉴얼 명	훈련일시	주요 훈련내용	훈련결과 개선내용	비고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2018.5.18	2018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매뉴얼 현행화 (협업체계 수정)	
지진 및 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	2018.10.16	지진 및 화재 대응 훈련	매뉴얼 현행화 (대응단계별 연락체계 수정)	
육상화물운송	2018.10.17	철도 대형사고 대비 사고수습 및 교통통제 훈련	매뉴얼 현행화 (우회로 및 대체수단 수정)	

○ 연도별 현황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매뉴얼 수	13	15	19	19	21



☞ 행동매뉴얼 수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 설명

- 정선알파인경기장에 따른 산사태 매뉴얼 및 관내 문화재 사고에 대비한 매뉴얼을 추가함

마.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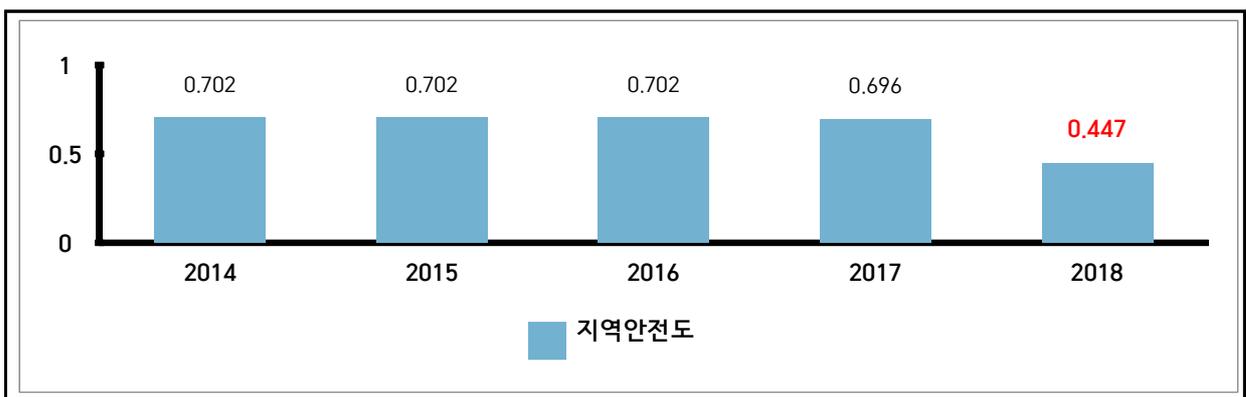
○ 진단분야별 점수

구 분	위험환경	위험관리능력	방재성능	지역안전도	등 급
진단결과	0.434	0.909	0.940	<b>0.447</b>	<b>2</b>

※ (안전) 1등급 <-----> 10등급 (위험)

○ 연도별 진단결과

구 분	평가항목			지역 안전도	등급	비고
	위험환경	위험 관리능력	방재성능			
2014년	0.542	0.577	0.829	0.702	8	
2015년	0.474	0.580	0.830	0.702	8	
2016년	0.458	0.553	0.830	0.702	8	
2017년	0.506	0.553	0.830	0.696	7	
<b>2018년</b>	<b>0.434</b>	<b>0.909</b>	<b>0.940</b>	<b>0.447</b>	<b>2</b>	



☞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등급의 증감원인

- 2018년도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는 2등급(0.447)이며 전년(7등급)보다 5등급 향상됨.
- 위험관리능력 및 방재성능 부분은 전년도에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개선되었으며, 위험 환경 부분도 다소 향상되어 전체 지역안전도가 많이 향상되었음.

바.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지진방재 종합계획 수립 추진

(가) 추진목적

- 정부의 “제1차 지진방재종합계획 (’ 15~’ 19년)” 수립과 경주 및 포항지진을 계기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우리군 자체 지진대응 및 대비 체계를 수립하여 지진재해 대응역량 강화 도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정선군 전역 A=1,220km<sup>2</sup>
- 사 업 량 : 지진방재 종합계획 수립 1식(내진성능평가 15개소 포함)
- 사 업 비 : 450백만원(’ 17년 100, ’ 18년 350)
- 사업기간 : 2017년 ~ 2019년(3년)

2) 홍수재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

(가) 추진목적

- 계측기관별 홍수 예·경보시설 정보공유로 신속대응 기반마련
- 중·소하천에 대한 홍수도달(유량, 시간 등) 사전예측
- 수계별 홍수도달 시간 및 수위변화 예측 등 통합정보관리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정선군 전역 A=1,220km<sup>2</sup>
- 사 업 량 : 홍수재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1식
- 사 업 비 : 1,000백만원(’ 17년 400, ’ 18년 400, ’ 19년 200)
- 사업기간 : 2017년 ~ 2019년(3년)

3) 풍수해보험

(가) 풍수해보험 개요

-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대설 등)로 인한 재난피해 복구를 돕기 위한 정책으로 군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권장하고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대상시설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주택)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 (온실)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으로 온실
- 보험료 지원 규모 : 총 보험료의 55~92% 정부지원
  - 일반 55~92%, 차상위계층 76~92%, 기초생활수급자 86~92% 지원

(나) 사업예산 현황

(단위천원)

구 분	합 계	정부지원				군비추가 지원	홍보비
		소 계	국비	도비	군비		
2017년	427,294	357,294	305,324	10,394	41,576	50,000	20,000
2018년	503,813	433,813	367,070	13,349	53,394	50,000	20,000

※ 우리군에서는 일반가입자 주택과, 영농목적의 비닐하우스 온실 등에 대한 개인부담분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주고자 풍수해보험료에 대한 추가지원 시책 추진.

(다) 가입현황

(단위 : 동, m<sup>2</sup>)

구 분	주택보험 가입현황			온실보험 가입현황			비 고
	대상 가구	가입 건수	비율(%)	대상 면적	가입 면적	비율(%)	
2017년	12,262	927	7.5	610,000	142,312	23.3	
2018년	7,125	931	13.0	620,400	151,606	24.4	

※ 전년대비 가입실적

- 주택 : 100.4% (17년 927건, 18년 931건)
- 온실 : 106.1% (17년 142,312m<sup>2</sup>, 18년 151,606m<sup>2</sup>)

4) 정선군민 안전보험 가입·운영

(가) 정선군민 안전보험 개요

- 정선군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 상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나) 보험계약사항

- 보장기간 : 2019. 3. 1. ~ 2020. 2. 29.(1년간)
- 피보험자 :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다) 보험금 청구 및 문의처

- 보험금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기된 청구사유 발생 시
-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군 홈페이지 게시)
- 문의처 : NH농협손해보험(T.1644-9666)

(라) 보험담보 및 보상한도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	정선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0만원
폭발,화재,붕괴상해후유장해	정선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중상해사망	정선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0만원
대중교통이용중상해후유장해	정선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0만원 한도
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	정선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상해후유장해	정선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강도 상해사망	정선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정선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0만원 한도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포함)	정선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0만원
익사사고사망	정선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정선군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부상등급 1급~5급 3,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정선군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정선군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의사상자지원비용	정선군민이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0만원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폭력죄, 상해, 폭행, 폭력에 의한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유독성물질 사망	피보험자가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자전거사고 사망	정선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정선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정선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진단 4주(28일)이상: 10만원 진단 5주(35일)이상: 20만원 진단 6주(42일)이상: 30만원 진단 7주(49일)이상: 40만원 진단 8주(56일)이상: 50만원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	정선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 한다는 진단을 받고, 1주일(7일)이상 입원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정선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만14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정선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 소제기된 경우 (만14세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정선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 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피해자 1인당) (만14세미만자 제외)	1인당 3,000만원 한도

- ※ “후유장해” 라 함은 질병이나 상해, 산재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함.
- ※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 담보는 가입할 수 없음(상법 제732조)
- ※ 일부 담보의 경우 피보험자의 범위가 제한됨
  - 스쿨존 교통사고(만 12세 이하)
- ※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경우 중복보상 불가

♣ 공시 관련사항 문의 및 의견 제출은 정선군 안전과로  
(담당자 : 김동진, 전화 : 033-560-2163)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